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74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3. 4 최정훈의원 외 2인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3. 7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3. 23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결산검사위원회선임(안 제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3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